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165 호 2019. 3. 14.(목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45호[도로명주소 부여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4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4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03회[주택건설사업계획(제1차 변경)승인 고시]..... 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09회[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].....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-321회[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]..... 10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</li> <li>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45호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3월 14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황토전길 189-25 외 1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**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**2019. 3. 14.**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 번	중전주소	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소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
1	울산광역시 북구	어물동 887-2	울산광역시 북구	황토전 길 189-25	2019-03- 14	기존 마을 자연부락 명칭인 황토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 09
2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명 촌지구 38B 3L	울산광역시 북구	진장 17길 36	2019-03- 1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으로 부여	2004-12- 27
3	울산광역시 북구	가대동 29	울산광역시 북구	농서로 515	2019-03- 14	예전 지명인 농서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4- 09
4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287-10	울산광역시 북구	동대 11길 8	2019-03- 14	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 20
5	울산광역시 북구	정자동 320-2	울산광역시 북구	무룡로 1109-9	2019-03- 14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 20
6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576	울산광역시 북구	신기 1길 15-4	2019-03- 14	기존 자연마을인 신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 09
7	울산광역시 북구	염포동 480-3	울산광역시 북구	중리 1길 33	2019-03- 14	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현재도 사용중인 마을이름으로 부여	2009-01- 05
8	울산광역시 북구	무룡동 708-2 외 1	울산광역시 북구	달곡 2길 26	2019-03- 14	예전지명인 달곡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 09
9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지구 D46B 3L	울산광역시 북구	송정 17길 12	2019-03- 14	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	2018-05- 10
10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219-1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산 업로 173	2019-03- 14	매곡 산업 단지내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매곡동과 산업단지의 의미를 함께 사용	2008-02- 28
11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매 곡지구 A51B 2L	울산광역시 북구	당수골 5길 41-4	2019-03- 14	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.	2017-05- 04
12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매 곡지구 A51B 3L	울산광역시 북구	당수골 5길 41-6	2019-03- 14	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.	2017-05- 04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46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3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중리1길 33 외 3건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 
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 
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9. 3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	시/군/구	주소	시/군/구	주소			
1	울산광역시 북구	동대 11길 8	울산광역시 북구	호계동 287-10	2019-03-14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	무룡로 1119-5	울산광역시 북구	정자동 320-2	2019-03-14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	신기1길 15-4	울산광역시 북구	매곡동 576	2019-03-14	건축물 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	중리1길 33	울산광역시 북구	염포동 480-3	2019-03-14	건축물 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-303호

## 주택건설사업계획(제1차 변경)승인 고시

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인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·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(제1차 변경)승인 하였기에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사업계획승인내역 : 【붙임1】 참조

2019년 3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 【붙임1】

## 1. 사업계획(제1차 변경)승인내역

구 분	변경 전					변경 후					비고
사업명칭	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					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					변경없음
사업위치	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					염포동 20번지 외 44필지					변경없음
사업주체	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인					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 외 1인					변경없음
사업주체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, 3층(진장동)				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34, 3층(진장동)					변경없음
대지면적	29,169㎡					29,343.2㎡					변 경
건축면적	10,596.838㎡					10,975.952㎡					변 경
연 면 적	32,241.0618㎡					33,928.9091㎡					변 경
건폐율/용적률	36.33% / 90.27%					37.41% / 95.16%					변 경
층수/동수/세대수	지하1층~지상5층/주22동, 부7동/264세대					지하1층~지상5층/주22동, 부7동/264세대					변경없음
사업규모 (단위 m <sup>2</sup> )	형별	세대수	전용	공용	공급	형별	세대수	전용	공용	공급	변 경
	76A	191	76.2320	20.3500	96.5820	78A	191	78.0515	25.0649	103.1164	변 경
	76B	1	76.2320	20.3501	96.5821	78B	1	78.0515	25.0721	103.1236	변 경
	84A	71	84.8140	22.3263	107.1403	84A	71	84.8140	27.0430	111.8570	변 경
	84B	1	84.8140	22.3286	107.1426	84B	1	84.8140	27.0430	111.8570	변 경
부대복리시설	구 분		합 계			구 분		합 계			변 경
	관리사무소		54.992㎡			관리사무소		61.138㎡			변 경
	경비실		34.874㎡			경비실		34.874㎡			변경없음
	전기/기계실		194.68㎡			전기/기계실		194.6796㎡			변 경
	재활용품 보관소		24.39㎡			재활용품 보관소		24.39㎡			변경없음
	작은 도서관		96.768㎡			작은 도서관		96.768㎡			변경없음
	경로당		93.456㎡			경로당		93.456㎡			변경없음
	주민공동시설		692.614㎡			주민공동시설		674.554㎡			변 경
	어린이놀이터(3개소)		524.06㎡			어린이놀이터(3개소)		465.41㎡			변 경
	조경시설		7,637.78㎡(26.18%)			조경시설		6,964.72㎡(23.73%)			변 경
사 업 비	73,568,000천원					73,568,000천원					변경없음
사업기간	2018. 06. ~ 2020. 04.					2018. 06. ~ 2020. 04.					변경없음
승인조건	기존 사업계획승인 내용 참조					“붙임” 문서 참조					변 경

## 2.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 등

건축법 제11조 『건축허가』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,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.

3. 승인관련 서류 : 북구청(건축주택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4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(☎241-80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 - 309호

## 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3월 14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사 업 명 : 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
2. 시 행 청 : 울산광역시 복구청(도시과)
3. 설치위치 : 원연암마을 내 4개소
4. 영상운영 : 울산광역시 복구청 안전정보과(CCTV 통합관제센터)
5. 촬영범위 및 시간 : 100M 이내 24시간
6. 예고기간 : 2019. 3. 14. ~ 4. 3.(20일간)
7. 의견제출
  -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 도시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    - 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    - 다. 기타 참고사항
    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처
      - 우 편 :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2층 도시과
      - 전 화 : 052) 241 - 7919
      - F A X : 052) 241 - 7909
    - 마. 의견서 제출 서식 : 【붙임】 참고
    - 바.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【붙 임】

<h1 style="margin: 0;">의 건 서</h1>				
사 업 명	원연암새뜰마을 방법용 CCTV 설치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기관/단체명)			
	대 표 자 (기관/단체일 경우)	생년월일	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원연암새뜰마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2019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				
제 출 자				(서명 또는 인)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				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-321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「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3월 14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복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관리공단의 설립(안 제1조 ~ 제6조)
- 나. 임원의 구성(안 제7조 ~ 제11조)
- 다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(안 제12조)
- 라. 임원의 임기(안 제13조)
- 마. 이사회 구성(안 제15조)
- 바. 직원의 임면(안 제19조)

- 사. 공단의 사업(안 제20조)
- 아. 대행사업의 비용부담(안 제21조)
- 자. 회계처리의 원칙(안 제23조)
- 차. 사업계획 및 예산(안 제24조)
- 카. 세입 및 결산(안 제25조, 제26조)
- 타. 공단의 감독(안 제28조 ~ 제30조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- 나.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 및 제76조(설립·운영)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홍보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#### ※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
-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
### 5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인격)**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자본금)**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**제5조(정관)**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임·직원에 관한 사항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설립등기)**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## 제2장 임원 및 직원

**제7조(임원)**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60조를 적용한다.

**제9조(이사장)**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.

**제10조(이사)**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,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,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

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

**제11조(감사)**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, 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

**제12조(임원추천위원회)**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6조의3에 의하며,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이하 법 제58조 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14조(임·직원의 겸직금지)**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구청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5조(이사회)**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

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,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,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**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(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)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, 당연직 이사 중 행정지원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.

**제17조(비밀누설 금지 등)**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18조(이사회 참여제한)**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「민법」 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**제19조(직원의 임면)**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### 제3장 사 업

제20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복합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
2.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·운영
3.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·운영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1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(이하 '구의회'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4장 재무회계

제22조(사업연도)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3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

계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4조(사업계획 및 예산)**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(세입)**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.

**제26조(결산)**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**제27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**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 대부(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

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제5장 감 독

**제28조(감독)**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

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 (명예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

**제29조(보고 및 검사 등)**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**제30조(업무상황의 공표)**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1조(권한의 위탁)**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32조(공무원의 파견)**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**제33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**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

**제34조(공인의 비치)**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」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.

**제35조(법령의 준용)**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.

**제3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권리 의무의 승계)**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**제3조(정관 및 제규정)**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·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4조(운영 시기)**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공단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.

**제5조(설립 시의 출자액)** 최초 공단설립 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.

**제6조(예산의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업무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

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)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둔다.

제8조(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)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업무 개시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조 례 명 :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 명(단 체 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